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
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
한다.

2016년 5월 1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5/16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08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토록 할 수 있다. 다만,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개정이유

숙직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당직자와 평일인 당직자 간 휴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직근무자의 휴무 규정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제5조 : 숙직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대체휴무 부여조항 신설